취 · 창업운영위원회규정 3-1-37

규정번호 3-1-37
제정일자 2024.7.24
최근개정 2026.9.21.
개정차수 2차
관리부서 취·창업팀

[규정명칭 변경 2026.2.6.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취·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취·창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6.2.6.)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
1. 취·창업지원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2.6.)
2. 취·창업 관련 정규교과·비교과 개발,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2.6.)
3. 취·창업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2.6.)
4. 정부·지자체 등 청년고용정책 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「진로교육법 및 직업안정법」에 근거한 진로취업지도에 관한 사항
6. 학생 및 교원 창업 관련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학생지원처장 포함 교내·외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우리대학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, 학생 대표 중에서 학생지원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학생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6.9.21.)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명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, 천재지변, 기타 재해나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화상회의 화면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의록 서명란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7조(기타) 기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진로취·창업센터운영규정(6-1-7)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2조제1호·제2호·제3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4항)